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25. 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기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

나.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
한시적 전담 기구 신설

2. 주요내용

가. 국 단위 : 증감 없음

나. 과 단위 : 증감 없음

1) 폐 지 : 아시아육상추진단(안 제9조)

2) 신 설 : 문화산단추진단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8조 및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반도체방산과”를 “문화산단추진단, 반도체방산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체육진흥과, 위생과 및 아시아육상추진단을”을 “체육진흥과 및 위생과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단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4조(종전의 고시·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·행정처분,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(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신설·분리 또는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, 부서의 장,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, 부서의 장, 부서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8조(첨단산업국에 두는 과) ① 첨단산업국에 신산업정책과, 반 <u>도체방산과</u> 및 전략산업과를 둔 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)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 과, 낭만관광과, <u>체육진흥과</u>, 위 <u>생과</u> 및 <u>아시아육상추진단</u>을 둔 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8조(첨단산업국에 두는 과) ① ----- 문 <u>화산단추진단</u>, <u>반도체방산과</u>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체육진흥과</u> 및 <u>위생과</u>를 ----- 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
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| 소 관 부 서 | | 총 무 과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과 장 | 김 혜 진 |
| | 팀 장 | 김 태 식 |
| | 담 당 자 | 임 영 도 (480-6773) |